가족회사운영규정 10-1-6

규정번호 10-1-6
제정일자 2011.1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7차 개정
관리부서 산학협력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족회사”라 함은 우리대학과 기술·경영지도, 공동연구, 취업, 교육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우리대학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.(개정 2024.7.24.)
2. <삭제(2024.7.24.)>
3. “담당교수”란 우리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 2024.7.24.)
4. <삭제(2024.7.24.)>

제2장 가족회사 운영지원

제3조(담당부서) ① 가족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을 가족회사 전담부서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, 2018.12.10.)

②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, 승인, 탈퇴 및 정보관리
2. 가족회사 등급관리 및 가족회사 관련 교원업적평가
3.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
4.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가입 및 승인) ① 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체는 가입신청서를 우리대학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12.10.)

② <삭제(2024.7.24.)>

③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에서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,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친 후 처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, 2018.12.10.)

④ 가입이 승인된 기업체는 우리대학이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지며 가족회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.(신설 2024.7.24.)

제4조의2(유료 가족회사 제도) ① 가족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·강화하고, 공유·협업 기반의 산학협력 지속가능성과 자립화를 목적으로 유료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(신설 2022.09.26.)

② 유료 가족회사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하되 등급, 연회비 등은 운영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22.09.26., 개정 2024.7.24)

③ 연회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납부하고 산학협력 추진 및 운영에 활용한다.(신설 2022.09.26.)

④ 유료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방안은 운영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22.09.26., 개정 2024.7.24)

제5조(증서발급)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 증서를 발급한다.

② 가족회사 증서는 가족회사 패로 대체 할 수 있다.

③ 가족회사 증서를 분실 등의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,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에서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, 2018.12.10.)

제6조(탈퇴 등) ①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·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지도교수의 확인과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.

② 가족회사가 사기 등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우리대학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회사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7조(가족회사에 대한 지원) 우리대학은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기술 및 경영 자문, 공동연구
2. 공용장비의 이용 및 연구소 설립
3. 취업 및 프로젝트 실습
4.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(개정 2024.7.24.)
5. 기타 상호 협의된 내용

제8조(MJC 산학협력 마일리지) ① 가족회사와의 산학협력 활동 활성화를 통해 기업지원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MJC 산학협력 마일리지(이하 “마일리지”라 한다)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22.09.26.)

②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운영 방안 및 기업지원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.(개정 2022.09.26.)

제3장 가족회사 운영위원회

제9조(가족회사 운영) 우리대학의 가족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해 심의·의결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10조<삭제(2024.7.24.)>

제11조<삭제(2024.7.24.)>

제12조<삭제(2024.7.24.)>

제4장<삭제(2024.7.24.)>

제13조<삭제(2024.7.24.)>
제14조<삭제(2024.7.24.)>
제15조<삭제(2024.7.24.)>

제5장<삭제(2024.7.24.)>

제16조<삭제(2024.7.24.)>
제17조<삭제(2024.7.24.)>
제18조<삭제(2024.7.24.)>

제6장 재 정 등

제19조(재정) 가족회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지원금과 지원기관의 지원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20조(정보보호) 산학협력처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12.10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12.6.4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2> <생략>

<13> 가족회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②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각각 “과반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의2, 제8조제1항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호~제4호, 제4조제2항·제3항·제4항, 제4조의2제2항·제4항, 제7조제4호, 제9조~제18조, 제4장, 제5장)